

제642회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24년 5월 7일(화) 14:00
- 장 소 : 법인회의실(행정관 3층)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7 인	2 인
재적임원	6 인	2 인
참석임원	5 인	1 인

1. 일 시

- 2024년 5월 7일(화) 14:00 ~ 15:30 (회의소집 통보일: 2024년 4월 29일)

2. 장 소

- 법인회의실(행정관 3층)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 임원

- 이사(5인) : 유자은, 진춘조, 조연순, 김진억, 전홍무
- 감사(1인) : 이준근

- 불참 임원

- 최갑식, 조광현

간서명



4. 안 건

- (1)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정관 변경에 관한 건
- (2)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정관시행세칙 변경에 관한 건
- (3) 임원 선임에 관한 건
- (4) 건국대학교 총장 선임 규정 제정에 관한 건
- (5)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한 건
- (6) 부속고등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건
- (7) 부속중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건
- (8) 교육용 기본재산(건물) 증축에 관한 건
- (9) 수익용 기본재산(건물) 증축에 관한 건
- (10) 2024년도 학교법인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보고에 관한 건
- (11) 이사회 회의록 대표 간(間)서명 임원 선출에 관한 건

5. 회의 내용

의장은 성원보고를 요청하다.

김호섭 실장은 재적이사 6명 중 5명의 이사가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한 후
전화 이사회 의결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다.

의장은 이사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제1의 안)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정관 변경에 관한 건

의장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정관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김호섭 실장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보직에 임상의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
변경, 의과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직제 신설, 최근 법령 및 규정 동향을
반영한 정관의 일부 표현을 개선하는 건이라고 한 뒤, 변경사항을 관련 규정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다.

< 이사들은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을 듣다. >

진춘조 이사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정관 변경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처리하자고
발의하다.

간서명



김진억 이사는 동의하다.

조연순 이사는 재청하다.

의장은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

의장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정관 변경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붙임 1.)하였음을 선언하다.

(제2의 안)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정관시행세칙 변경에 관한 건

의장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정관시행세칙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김호섭 실장은 법인 기능직의 급수 표기를 ‘등급’에서 ‘급’으로 변경하고, 최근 법령 및 규정 동향을 반영하여 정관시행세칙의 일부 표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 뒤, 변경사항을 관련 규정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다.

< 이사들은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을 듣다. >

김진억 이사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정관시행세칙 변경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처리 하자고 발의하다.

전홍무 이사는 동의하다.

진춘조 이사는 재청하다.

의장은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

의장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정관시행세칙 변경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붙임 2.) 하였음을 선언하다.

(제3의 안) 임원 선임에 관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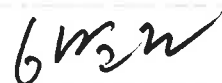
의장은 임원 선임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김호섭 실장은 현재 공석인 이사의 후임이사 1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 뒤, 관련규정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장은 김교순 후보를 신임 이사로 추천하다.

김호섭 실장은 김교순 후보의 학력, 주요경력 등을 설명하다.

간서명



< 이사들은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을 듣다. >

진춘조 이사는 동의하다.

김진억 이사는 재청하다.

의장은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

의장은 임기만료된 후임 이사 겸 교육경험이사로 김교순(1952.04.26.) 후보를 교육부 승인일로부터 4년간의 임기로 선임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4의 안) 건국대학교 총장 선임 규정 제정에 관한 건

의장은 건국대학교 총장 선임 규정 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김호섭 실장은 제22대 총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건국대학교 총장 선임에 관한 규칙」, 「건국대학교 총장 선임에 관한 운영세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건이라고 한 뒤, 관련규정 등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다.

< 이사들은 건국대학교 총장 선임 규정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다. >

의장은 건국대학교 총장 선임에 관한 규칙 및 운영세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

의장은 건국대학교 총장 선임 규정을 (붙임 3.)과 같이 제정하기로 함으로써 건국대학교 총장 선임 규정 제정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5의 안)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한 건

의장은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김호섭 실장은 관련규정에 의거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 5인을 임명하고자 하는 건이라고 한 뒤, 성명, 소속, 직책 등을 관련규정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다.
전홍무 이사는 원안과 같이 처리하자고 발의하다.

진춘조 이사는 동의하다.


조연순 이사는 재청하다.

의장은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

의장은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 임명과 관련하여

간서명



위원으로 임명

함으로써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음을 선언한다.

(제6의 안) 부속고등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건

의장은 부속고등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김호섭 실장은 학생 및 지역사회의 요구와 신뢰에 부합하는 교육활동 전개를 위해 인공 지능 디지털 교육 활성화와 진로 선택 중심의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에 필수적인 지구과학, 정보·컴퓨터 교과와 정규교원 임용을 위해 신규임용 사전협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 뒤, 관련 규정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다.

< 이사들은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을 듣다. >

조연순 이사는 부속고등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처리하자고 발의하다.

진춘조 이사는 동의하다.

전홍무 이사는 재청하다.

의장은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

의장은 부속고등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7의 안) 부속중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건

의장은 부속중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김호섭 실장은 주요교과인 수학, 과학(물리) 교과와 정규교원 임용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력 신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신규임용 사전협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 뒤, 관련 규정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다.

< 이사들은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을 듣다. >

전홍무 이사는 부속중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처리하자고 발의하다.

조연순 이사는 동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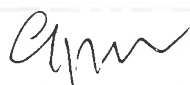
김진억 이사는 재청하다.

의장은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

의장은 부속중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간서명



(제8의 안) 교육용 기본재산(건물) 증축에 관한 건

의장은 교육용 기본재산(건물) 증축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김호섭 실장은 (1)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공학관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증축의 건, (2)건국대학교 병원의 상급종합병원 기준 충족을 위하여 이사회(631회, 2022.10.20.)에서 의결된 병원 증축 관련하여 증축 진행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캐노피를 추가 설치(4.45㎡)함에 따라 기존 승인받은 면적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건이라고 한 뒤, 증축 위치, 내역, 예상비용, 증축 재원 등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다.

< 이사들은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을 듣다. >

진춘조 이사는 교육용 기본재산(건물) 증축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처리하자고 발의하다.

김진억 이사는 동의하다.

전홍무 이사는 재청하다.

의장은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

의장은 건국대학교 (1)교육용 기본재산(서울캠퍼스 공학관)을 44.1㎡(지상1~지상5층 각층 8.82㎡) 증축하고, (2)교육용 기본재산(건국대학교병원)을 1,303.58㎡(지상 3층 5.34㎡, 4층 210.12㎡, 5층 933.91㎡, 6층 154.21㎡) 증축하기로 함으로써 교육용 기본재산(건물) 증축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9의 안) 수익용 기본재산(건물) 증축에 관한 건

의장은 수익용 기본재산(건물) 증축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김호섭 실장은 수익용 기본재산(건국AMC 스타시티영존) 중앙광장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가 우천시 우수 유입 등으로 오작동 발생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상부 구조물(캐노피)을 설치(증축, 32.56㎡)하여 시설물 보호 및 이용객 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건이라고 한 뒤, 증축 위치, 내역, 사업 기간, 예상비용, 증축 재원 등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다.

< 이사들은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을 듣다. >

전홍무 이사는 수익용 기본재산(건국AMC 스타시티영존) 증축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

간서명



이 처리하자고 발의하다.

조연순 이사는 동의하다.

진춘조 이사는 재청하다.

의장은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

의장은 수익용 기본재산(건국AMC 스타시티영존)을 32.56㎡(지하1층) 증축하기로 함으로써 수익용 기본재산(건물) 증축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10의 안) 2024년도 학교법인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보고에 관한 건

의장은 2024년도 학교법인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보고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김호섭 실장은 2024년도 학교법인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건이라고 한 뒤, 학교법인 안전보건 경영방침·경영체계·전담조직 구성과 역할, 2024년도 안전보건예산, 2023년도 안전보건관리 활동실적, 2024년도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그 세부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 이사들은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을 듣다. >

의장은 2024년도 학교법인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보고에 관한 건이 원안과 같이 보고되었음을 확인하다.

(제11의 안) 이사회 회의록 대표 간(間)서명 임원 선출에 관한 건

의장은 이사회 회의록 대표 간서명 임원 선출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김호섭 실장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출석임원 중 3인을 대표 간(間)서명 임원으로 호선하는 건이라고 한 뒤, 관련규정에 대하여 설명하다.

의장은 본인과 진춘조 이사, 이준근 감사를 이사회 회의록 대표 간서명 임원으로 선출하자고 발의하고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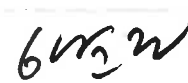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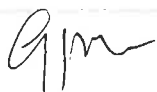
<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

의장은 이사회 회의록 대표 간서명 임원으로 유자은 이사장, 진춘조 이사, 이준근 감사를 선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6. 폐회 선언

- 15시 30분 이상의 회의를 마치고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간서명



2024년 5월 7일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 유자은

(서명) 

이 사 최갑식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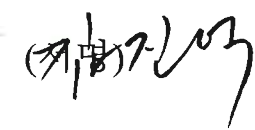
이 사 진춘조

(서명) 


이 사 조연순

(서명) 

이 사 김진억

(서명) 

이 사 전홍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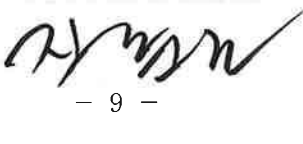

(서명) 

감 사 조광현 (서명)

감 사 이준근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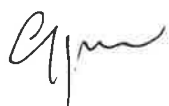
간서명

(붙임 1.) 정관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조 ~ 제24조의3 (생략)	제1조 ~ 제24조의3 (현행과 동일)
<p>제25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생략)</p> <p>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p> <p>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p> <p>⑤감사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 <p>⑦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4. 산업체(중소기업 제외)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산업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p>제25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현행과 동일)</p> <p>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p> <p>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p> <p>⑤감사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사람 <p>⑦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체(중소기업 제외)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산업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6조 ~ 제40조 (생략)	제26조 ~ 제40조 (현행과 동일)

간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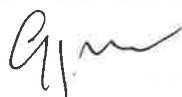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p>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국가 또는 다른 학교법인이나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u>자에게</u> 귀속된다.</p>	<p>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국가 또는 다른 학교법인이나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u>사람에게</u> 귀속된다.</p>
<p>제42조 ~ 제43조 (생략)</p>	<p>제42조 ~ 제43조 (현행과 동일)</p>
<p>제43조의2 (기간제교원) ①임용권자는 중고등학교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u>자</u> 중에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② (생략)</p>	<p>제43조의2 (기간제교원) ①임용권자는 중고등학교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u>사람</u> 중에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p> <p>1. ~ 5. (현행과 동일)</p> <p>② (현행과 동일)</p>
<p>제43조의3 (전형결과의 공개) ①부속중고등학교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u>자</u>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43조의3 (전형결과의 공개) ①부속중고등학교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u>사람</u>이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동일)</p>
<p>제44조 ~ 제47조 (생략)</p>	<p>제44조 ~ 제47조 (현행과 동일)</p>
<p>제48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u>자</u>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u>자</u></p> <p>2. 징계의결이 요구된 <u>자</u></p> <p>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u>자</u>(약식명령이 청구된 <u>자</u>는 제외한다)</p> <p>② (생략)</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u>자</u>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u>자</u>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p>	<p>제48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u>사람</u>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u>사람</u></p> <p>2. 징계의결이 요구된 <u>사람</u></p> <p>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u>사람</u>(약식명령이 청구된 <u>사람</u>은 제외한다)</p> <p>② (현행과 동일)</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u>사람</u>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u>사람</u>이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p>

간서명




현행	개정(안)
<p>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p> <p>④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⑥ (생략)</p> <p>⑦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p>	<p>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p> <p>④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⑥ (현행과 동일)</p> <p>⑦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p>
<p>제49조 ~ 제50조의2 (생략)</p>	<p>제49조 ~ 제50조의2 (현행과 동일)</p>
<p>제50조의3 (명예퇴직수당) ①본 법인 직원과 각급 학교의 교직원 및 기능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50조의3 (명예퇴직수당) ①본 법인 직원과 각급 학교의 교직원 및 기능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퇴직일 전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동일)</p>
<p>제50조의4 (생략)</p>	<p>제50조의4 (현행과 동일)</p>
<p>제50조의5 (특별승진) 중고등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기능직원 포함)으로서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5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p>	<p>제50조의5 (특별승진) 중고등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기능직원 포함)으로서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제5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p>
<p>제82조 (생략)</p>	<p>제82조 (현행과 동일)</p>
<p>제83조 (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별정직 및 기능직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p>제83조 (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별정직 및 기능직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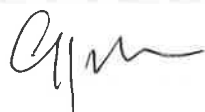
간서명





현 행	개 정(안)
<p>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u>자</u></p> <p>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u>자</u></p> <p>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u>자</u></p> <p>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u>자</u></p> <p>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u>자와</u>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u>자</u></p> <p>②일반직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u>자들</u>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채용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84조 (생략)</p> <p>제84조의2(공로연수) 부속중·고등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무직원으로서 정년 도래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u>자들</u> 대상으로 공로연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청의 지침에 따른다.</p> <p>제85조 ~ 제90조 (생략)</p> <p>제91조 (학장·대학원장 등) ① ~ ③ (생략)</p> <p>④원장과 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와 같이 부원장 또는 부학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p> <p>1.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국제부원장 각 1인</p> <p>2. 의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교육부원장, 교육(충주병원)부원장 각 1인</p>	<p>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u>사람</u></p> <p>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u>사람</u></p> <p>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u>사람</u></p> <p>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u>사람</u></p> <p>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u>사람과</u>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u>사람</u></p> <p>②일반직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u>사람을</u>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채용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동일)</p> <p>제84조 (현행과 동일)</p> <p>제84조의2(공로연수) 부속중·고등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무직원으로서 정년 도래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u>사람을</u> 대상으로 공로연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청의 지침에 따른다.</p> <p>제85조 ~ 제90조 (현행과 동일)</p> <p>제91조 (학장·대학원장 등) ① ~ ③ (현행과 동일)</p> <p>④원장과 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와 같이 부원장 또는 부학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p> <p>1.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국제부원장 각 1인</p> <p>2. 의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교육부원장, 교육(충주병원)부원장 각 1인</p>

간서명





현행	개정안
<p>3. 공과대학: 부학장 2인</p> <p>4. 대학원, 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제외), 특수대학원, 사회과학대학: 부원장 또는 부학장 1인</p> <p><u><신설></u></p> <p>⑤ (생략)</p> <p>제92조 ~ 제95조의2 (생략)</p> <p>제96조 (의료원) ① ~ ⑤ (생략)</p> <p>⑥의료원에 건국대학교 병원·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을 두고, 각 병원에는 원장을 두며, <u>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u></p> <p>⑦건국대학교 병원에는 진료업무를 통할하는 진료부원장과 행정업무를 통할하는 행정부원장 및 연구업무를 통할하는 연구부원장을 두고, <u>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는 진료업무를 통할하는 진료부원장과 행정업무를 통할하는 행정처장을 두며, 진료부원장 및 연구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행정부원장 및 행정처장은 참여 또는 행정전문가로 보한다.</u></p> <p>⑧ (생략)</p> <p>⑨병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건국대학교 병원에 기획관리실·홍보실·적정진료(QI)실·교육수련부를 두고, <u>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기획관리실·대의협력실·적정진료(QI)실·교육수련부를 두며, 실장 및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으로 보한다. 건국대학교 병원 기획관리실·홍보실·적정진료(QI)실·교육수련부에는 실장 또는 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u></p> <p>⑩건국대학교 병원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p>	<p>3. 공과대학: 부학장 2인</p> <p>4. 대학원, 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제외), 특수대학원, 사회과학대학: 부원장 또는 부학장 1인</p> <p><u>5. 의과대학: 교무부학장, 학생부학장, 교육부학장, 교육(충주병원)부학장 각 1인</u></p> <p>⑤ (현행과 동일)</p> <p>제92조 ~ 제95조의2 (현행과 동일)</p> <p>제96조 (의료원) ① ~ ⑤ (현행과 동일)</p> <p>⑥의료원에 건국대학교 병원·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을 두고, 각 병원에는 원장을 두며, <u>건국대학교병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건국대학교충주병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임상의사로 보할 수 있다.</u></p> <p>⑦건국대학교 병원에는 진료업무를 통할하는 진료부원장과 행정업무를 통할하는 행정부원장 및 연구업무를 통할하는 연구부원장을 두고, <u>진료부원장 및 연구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행정부원장은 참여 또는 행정전문가로 보한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는 진료업무를 통할하는 진료부원장과 행정업무를 통할하는 행정처장을 두며, 진료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의사로 보하고, 행정처장은 참여 또는 행정전문가로 보한다.</u></p> <p>⑧ (현행과 동일)</p> <p>⑨병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건국대학교 병원에 기획관리실·홍보실·적정진료(QI)실·교육수련부를 두고, <u>실장 및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으로 보하며, 실장 또는 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기획관리실·대의협력실·적정진료(QI)실·교육수련부를 두며, 실장 및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임상의사 또는 부참여 이상으로 보한다.</u></p> <p>⑩건국대학교 병원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p>

간서명

현행	개정(안)
<p>진료활성화를 위해 각 센터를 두며, 건국대학교 병원 센터에는 센터장 및 부센터장을 둘 수 있고, <u>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는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 의사, 부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 의사</u>로 보한다.</p> <p>⑪ (생략)</p> <p>⑫ 건국대학교 병원에 진료부원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지원부와 병원의 의료정보업무를 전담하는 의료정보실을 두고, 연구부원장 산하에 임상의학연구소, 연구지원실을 두며, 건국대학교 병원 및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감염관리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감염관리실을 두되,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실장 및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u>교원</u>으로 보한다. 의료정보실에는 실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p> <p>⑬ 건국대학교 병원에 하부조직으로 진료 각 과, 분과 및 44개 이내의 부서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하부조직으로 진료 각 과 및 26개 이내의 부서를 두고, 명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하며, 진료 각 과 및 분과의 과장은 <u>부교수</u>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 의사,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p>	<p>진료활성화를 위해 각 센터를 두며, 건국대학교 병원 센터에는 센터장 및 부센터장을 둘 수 있고, <u>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 의사, 부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 의사</u>로 보한다. <u>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 의사</u>로 보한다.</p> <p>⑪ (현행과 동일)</p> <p>⑫ 건국대학교 병원에 진료부원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지원부와 병원의 의료정보업무를 전담하는 의료정보실을 두고, 연구부원장 산하에 임상의학연구소, 연구지원실을 두며, 건국대학교 병원 및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감염관리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감염관리실을 두되,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실장 및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u>교원 또는 임상 의사</u>로 보한다. 의료정보실에는 실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p> <p>⑬ 건국대학교 병원에 하부조직으로 진료 각 과, 분과 및 44개 이내의 부서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하부조직으로 진료 각 과 및 26개 이내의 부서를 두고, 명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하며, 진료 각 과 및 분과의 과장은 <u>조교수</u>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 의사,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p>
<p>제97조 ~ 제116조 (생략)</p> <p>제117조 (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u>자</u>,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u>자</u>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 5명 2. 직원 2명 3. 조교 1명 4. 학생 2명 	<p>제97조 ~ 제116조 (현행과 동일)</p> <p>제117조 (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u>사람</u>,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u>사람</u>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 5명 2. 직원 2명 3. 조교 1명 4. 학생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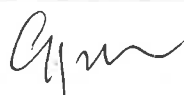
간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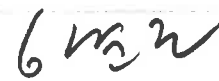
현 행	개 정(안)
<p>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u>자</u> 2명 ② (생략)</p> <p>제118조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u>자</u>를 위촉한다.</p> <p>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u>자</u>를 위촉한다.</p> <p>3.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조교회의에서 추천한 <u>자</u>를 위촉한다.</p> <p>4.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서울 및 GLOCAL(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에서 각 1명을 추천한 <u>자</u>를 위촉한다.</p> <p>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u>자</u>는 외부 인사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p> <p>제119조 ~ 제126조 (생략)</p>	<p>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u>사람</u> 2명 ② (현행과 동일)</p> <p>제118조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u>사람</u>을 위촉한다.</p> <p>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u>사람</u>을 위촉한다.</p> <p>3.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조교회의에서 추천한 <u>사람</u>을 위촉한다.</p> <p>4.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서울 및 GLOCAL(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에서 각 1명을 추천한 <u>사람</u>을 위촉한다.</p> <p>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u>사람</u>은 외부 인사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p> <p>제119조 ~ 제126조 (현행과 동일)</p>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하되, 제91조 제4항 제5호는 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간서명





(붙임 2.) 정관시행세칙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조 ~ 제12조 (생략)	제1조 ~ 제12조 (현행과 동일)
제13조 (정년) ① (생략) ②제1항 정년 해당자는 정년에 달하는 날에 속하는 학기말에 당연퇴직한다. 다만, 부속중·고등학교 일반직원 및 기능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③ (생략)	제13조 (정년) ① (현행과 동일) ②제1항의 정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년에 달하는 날에 속하는 학기말에 당연퇴직한다. 다만, 부속중·고등학교 일반직원 및 기능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③ (현행과 동일)
제13조의2 (생략)	제13조의2 (현행과 동일)
제13조의3 (명예교수 등) ① (생략) ②일반직원 중 정년퇴직자로서 본 법인과 법인이 경영하는 기관의 발전에 공헌하고 건강하며 능력이 있는 자를 일반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촉탁직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촉탁직원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 ③ (생략)	제13조의3 (명예교수 등) ① (현행과 동일) ②일반직원 중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본 법인과 법인이 경영하는 기관의 발전에 공헌하고 건강하며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촉탁직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촉탁직원은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 한다. ③ (현행과 동일)
제14조 ~ 제15조의2 (생략)	제14조 ~ 제15조의2 (현행과 동일)
제16조 (포상) ①본 법인과 본 법인이 경영하는 기관(이하 "본 학원"이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자에게는 다음에 의하여 표창한다. 1. 장기근속상 본 학원에서 20년 또는 30년을 계속 근속한 자에게는 각 기관의 장이 근속상을 시상한다. 2. 공로상 본 학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각 기관의 장이 공로상 또는 감사장(패)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①본 법인과 본 법인이 경영하는 기관(이하 "본 학원"이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게 다음에 의하여 표창한다. 1. 장기근속상 본 학원에서 20년 또는 30년을 계속 근속한 사람에게 각 기관의 장이 근속상을 시상한다. 2. 공로상 본 학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각 기관의 장이 공로상 또는 감사장(패)을 수여할 수 있다.

간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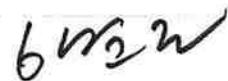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p>3. 모범상 본 학원에서 모범적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발전적인 창의를 제안한 자에게 각 기관의 장은 모범상을 수여할 수 있다.</p> <p>②근속상, 공로상 및 모범상을 수상한 자는 승진·승급의 평정에도 이를 참작 사정한다.</p> <p>제17조 ~ 제20조 (생략)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총</td>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right;">40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반</td> <td style="text-align: right;">직 28명</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2급 (참 여)</td> <td style="text-align: right;">3명</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3급 (부참여)</td> <td style="text-align: right;">4명</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4급 (참 사)</td> <td style="text-align: right;">5명</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5급 (부참사)</td> <td style="text-align: right;">7명</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6급 (주 사)</td> <td style="text-align: right;">4명</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7급 (부주사)</td> <td style="text-align: right;">3명</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8급 (서 기)</td> <td style="text-align: right;">2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능</td> <td style="text-align: right;">직 12명</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u>6 등 급</u></td> <td style="text-align: right;">2명</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u>7 등 급</u></td> <td style="text-align: right;">3명</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u>8 등 급</u></td> <td style="text-align: right;">3명</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u>9 등 급</u></td> <td style="text-align: right;">2명</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u>10 등 급</u></td> <td style="text-align: right;">2명</td> </tr> </table> <p>(별표 2) ~ (별표 7) (생략)</p>	총	계	40명	일	반	직 28명		2급 (참 여)	3명		3급 (부참여)	4명		4급 (참 사)	5명		5급 (부참사)	7명		6급 (주 사)	4명		7급 (부주사)	3명		8급 (서 기)	2명	기	능	직 12명		<u>6 등 급</u>	2명		<u>7 등 급</u>	3명		<u>8 등 급</u>	3명		<u>9 등 급</u>	2명		<u>10 등 급</u>	2명	<p>3. 모범상 본 학원에서 모범적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발전적인 창의를 제안한 사람에게 각 기관의 장은 모범상을 수여할 수 있다.</p> <p>②근속상, 공로상 및 모범상을 수상한 사람은 승진·승급의 평정에도 이를 참작 사정한다.</p> <p>제17조 ~ 제20조 (현행과 동일)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총</td>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right;">40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반</td> <td style="text-align: right;">직 28명</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2급 (참 여)</td> <td style="text-align: right;">3명</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3급 (부참여)</td> <td style="text-align: right;">4명</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4급 (참 사)</td> <td style="text-align: right;">5명</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5급 (부참사)</td> <td style="text-align: right;">7명</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6급 (주 사)</td> <td style="text-align: right;">4명</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7급 (부주사)</td> <td style="text-align: right;">3명</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8급 (서 기)</td> <td style="text-align: right;">2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능</td> <td style="text-align: right;">직 12명</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u>6 급</u></td> <td style="text-align: right;">2명</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u>7 급</u></td> <td style="text-align: right;">3명</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u>8 급</u></td> <td style="text-align: right;">3명</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u>9 급</u></td> <td style="text-align: right;">2명</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u>10 급</u></td> <td style="text-align: right;">2명</td> </tr> </table> <p>(별표 2) ~ (별표 7) (현행과 동일)</p>	총	계	40명	일	반	직 28명		2급 (참 여)	3명		3급 (부참여)	4명		4급 (참 사)	5명		5급 (부참사)	7명		6급 (주 사)	4명		7급 (부주사)	3명		8급 (서 기)	2명	기	능	직 12명		<u>6 급</u>	2명		<u>7 급</u>	3명		<u>8 급</u>	3명		<u>9 급</u>	2명		<u>10 급</u>	2명
총	계	40명																																																																																									
일	반	직 28명																																																																																									
	2급 (참 여)	3명																																																																																									
	3급 (부참여)	4명																																																																																									
	4급 (참 사)	5명																																																																																									
	5급 (부참사)	7명																																																																																									
	6급 (주 사)	4명																																																																																									
	7급 (부주사)	3명																																																																																									
	8급 (서 기)	2명																																																																																									
기	능	직 12명																																																																																									
	<u>6 등 급</u>	2명																																																																																									
	<u>7 등 급</u>	3명																																																																																									
	<u>8 등 급</u>	3명																																																																																									
	<u>9 등 급</u>	2명																																																																																									
	<u>10 등 급</u>	2명																																																																																									
총	계	40명																																																																																									
일	반	직 28명																																																																																									
	2급 (참 여)	3명																																																																																									
	3급 (부참여)	4명																																																																																									
	4급 (참 사)	5명																																																																																									
	5급 (부참사)	7명																																																																																									
	6급 (주 사)	4명																																																																																									
	7급 (부주사)	3명																																																																																									
	8급 (서 기)	2명																																																																																									
기	능	직 12명																																																																																									
	<u>6 급</u>	2명																																																																																									
	<u>7 급</u>	3명																																																																																									
	<u>8 급</u>	3명																																																																																									
	<u>9 급</u>	2명																																																																																									
	<u>10 급</u>	2명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붙임 3.) 건국대학교 총장 선임에 관한 규칙 및 운영세칙(안) 전문

건국대학교 총장 선임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국대학교의 총장 선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2조(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설치) 총장후보자 추천 및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총관위”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총관위는 대학 교무위원(전직 포함) 5인으로 구성하며, 전공 계열, 성별, 소속 대학(원) 교원 수를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4조(회의) ①총관위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총관위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총관위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총관위 기능 및 운영) ①총관위는 총장후보 응모자에 대한 기본역량 심사, 총장후보자 추천 및 선거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총관위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장후보 응모자에게 보충서류를 요구하거나 질문서를 보낼 수 있다.

③총관위는 총장후보 응모자에 대한 기본역량 심사를 위해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교내외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④총관위는 총장후보 응모자의 기본역량 심사를 완료한 후, 적격 판정을 받은 총장후보자를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간서명



제3장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

제6조(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의 설치) 총관위에서 추천한 총장후보자에 대한 정책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이하 “총선위”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총선위는 사회지도층(기부자 포함, 이하 “사회지도층”이라 한다) 인사 6인, 교수 대표 43인, 직원 대표 14인, 학생 대표 7인, 동문회 대표 5인 등 총 75인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총선위 위원들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지도층 인사 6인은 법인 이사장이 지명한다.
2. 교수를 대표하는 위원은 학(원)장 주재하에 교수회의를 통하여 각 대학(원)별로 별표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출한다.
3.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 14인 중 7인은 직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고, 나머지 7인은 각 캠퍼스 총무처장 주재하에 회의를 통하여 서울캠퍼스 5인, 글로벌캠퍼스 2인을 선출한다.
4. 동문회를 대표하는 위원 5인은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5.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 7인은 재학생으로서 서울캠퍼스 학생 대표 4인, 글로벌캠퍼스 학생 대표 2인, 대학원 학생 대표 1인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추천은 반드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성원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천 요청기한 내 추천이 없을 경우 추천되지 않은 위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총선위를 구성하며, 총선위 위원 사퇴 등에 따른 결원 발생 시 별도로 충원하지 않는다.

제9조(총선위 위원들의 자격) ①교수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임교원 중 3년 이상 재직하고 승진·승급에 탈락한 사실이 없으며 5년 이내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②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은 일반직원 중 3년 이상 재직하고 5년 이내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선위 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

1. 총장후보 응모자
2. 총관위 위원

간서명



3. 현재 교무위원(급) 또는 부속기관장(급) 신분을 가진 사람

4. 총장후보 응모자의 추천인

5. 연구년, 파견, 휴직, 징계처분 중인 사람

6. 총장후보 응모자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사람

제10조(총선위 위원장) ①총선위 위원장은 총선위 교수 위원 중에서 총관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총선위 위원장은 총장후보자 소견발표회 진행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위원회 운영

제11조(서약) 총관위 및 총선위 위원은 총장후보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정성 및 비밀 유지를 위해 별지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총장후보자 선정을 위한 총관위 및 총선위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총선위 위원은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연·학연·혈연·문벌 등에 얽매이지 않고 건전한 양식에 따라 공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③총선위 위원은 특정후보자를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으며,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④총선위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총관위 위원장은 총관위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총장이 선임된 때에 만료되며,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총관위 및 총선위도 자동 해산된다.

제14조(간사 및 행정지원 등) ①총관위 및 총선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법인 이사장이 법인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총관위 및 총선위의 필요 경비와 행정 지원은 법인에서 담당한다.

제5장 총장후보자 선정

제15조(총장후보자의 자격) 총장후보자는 학문적 소양과 덕망을 갖추고 건국대학교 건학이념을 존중하며, 탁월한 국제적 안목과 학교발전에 기여할 경영능력을 소

간서명



유한 사람으로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본교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2. 본교 정년트랙 전임교원 4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다만, 동일 대학(원)에서 10인을 초과하여 추천받아서는 아니되며, 교원 1인이 총장후보자를 2인 이상 중복 추천한 경우에는 당해 추천을 전부 무효로 한다.)

제16조(공개모집 공고) 총관위는 건국대학교 홈페이지에 총장후보자 공개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총장후보 응모자의 선거운동 금지) ①총장후보 응모자는 선거벽보 부착, 현수막 설치, 유인물 배포, 가정통신문·이메일·문자 발송, 총선위 위원에 대한 개별·전화·각종 SNS를 통한 접촉, 기타 향응 제공 등 어떠한 선거운동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②선거운동 금지 기간은 이 규칙 제정(이사회 의결) 다음날부터 이사회에서 총장 선임 시까지로 한다.

제18조(총장후보자 자격 박탈 및 조치) ①총장후보자가 제17조제1항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총관위 위원장은 총관위의 의결을 거쳐 총장후보자 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

②제1항 또는 제5조의 부적격 판정에 따라 총장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총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총장후보자에서 제외된 사람과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이 본교 교직원일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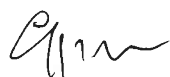
제6장 총장의 선임

제19조(총장후보자 추천) ①총선위는 적격 판정을 받은 총장후보 응모자를 대상으로 소견발표회를 실시한 후, 위원 1인이 총장후보자 1인을 투표하여 상위득표자 3인을 총장후보자로 선정한다.

②총관위 위원장은 선정된 총장후보자를 지체 없이 법인 이사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총장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순위표시 없는 명단과 함께 관련서류를 첨부하

간서명



여야 한다.

제20조(이사회 총장 선임) ①이사회는 총선위에서 선정된 3인의 총장후보자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1인을 총장으로 선임한다.

②이사회가 총장후보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총선위가 실시한 총장후보자에 대한 평가 등의 자료는 참고할 수 있으나, 이 자료에 구애되거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7장 규칙 변경

제21조(규칙 변경) 이 규칙의 변경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7일(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별표>

캠퍼스	기관수	기관별 인원수	대학(원)
서울캠퍼스	1	6명	공과대학(대학원 포함)
	2	3명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7	2명	KU융합과학기술원, 상허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교육대학원 포함), 경영대학, 이과대학, 수의과대학, 예술디자인대학
	3	1명	법학전문대학원, 건축대학(건축전문대학원 포함), 부동산과학원(상허교양대학 포함)
	소계	29명	
글로벌캠퍼스	1	6명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포함)
	1	3명	인문사회융합대학(교양대학 포함)
	2	2명	의료생명대학, 과학기술대학
	1	1명	디자인대학
	소계	14명	
합계		43명	

※ 기관별 인원수는 6인을 초과하지 않음.

간서명





<별지서식1>-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용

서 약 서

본인은 건국대학교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총장 선임과 관련된 모든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편견도 배제함은 물론, 외부로부터의 불필요한 영향에 대하여 공명정대하게 대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인)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 귀하

간서명



<별지서식2>-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용

서 약 서

본인은 건국대학교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총장 선임과 관련된 모든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편견도 배제함은 물론, 외부로부터의 불필요한 영향에 대하여 공명정대하게 대처할 것을 서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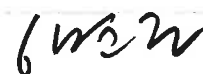
년 월 일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인)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 귀하

간서명



건국대학교 총장 선임에 관한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건국대학교 총장 선임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총장후보 응모자에 대한 기본역량 심사 기준 및 방법, 총장후보자 선정절차 등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총관위”라 한다) 및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이하 “총선위”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관위 기능) 총관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후보자 선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2. 총장후보자 공개 모집 및 접수에 관한 사항
3. 총장후보 응모자 제출서류의 적격 여부
4. 총장후보 응모자의 적격성 검증
5. 선거 관리(총장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6. 총장후보 응모자에 대한 제보(투서, 민원, 규정 위반 등)의 처리
7. 기타 총관위 및 총선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모집공고) ①총장후보자의 공개모집 공고문은 응모자격,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장소 및 기타사항으로 구성하며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후보 응모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이력서 1부
3. 응모소견서 1부(A4 5매 이내)
4. 정책·공약요약자료(홈페이지 공지용 등) 1부
5. 사진 및 이력서(홈페이지 공지용 등) 1부
6. 자기검증 리스트 1부(별지 제3호 서식)
7. 총장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8. 서약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9.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10. 개인정보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간서명



제4조(기본역량 심사 등) ①규칙 제5조에 따라 총관위는 총장후보 응모자에 대한 기본 역량 및 적격 여부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따라 엄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총장후보 응모자에 대한 기본역량 심사 및 검증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국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5조 연구부정행위

(단, 총장후보 응모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조사가 완료되어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제청된 사안에 한함.)

2. 결격사유(금전 문제, 성 비위 등 법률적·윤리적 흠결) 해당 여부

3. 교수업적(연구실적, 승진·승급 탈락 여부 등), 상벌

4. 교내 보직 등 각종 경력, 대내·외 평판 등

5. 기타 검증이 필요한 사항

③총관위는 필요시 교내 유관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내외 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④기본역량 심사 및 검증의 절차, 방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관위에서 따로 정한다.

⑤총관위는 총장후보 응모자에 대한 기본역량 심사 및 검증 결과를 총선위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소견발표회) ①소견발표회는 총장후보 응모자의 소견발표(각 10분) 및 질문에 대한 답변(각 15분)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소견발표 순서는 소견발표회 직전에 소견발표 대상자들의 직접 추첨을 통해 정한다.

③소견발표에는 ‘건국대학교의 발전 및 위상제고 방안(교육·연구·학생지원·행정·재정 분야 등)’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후보자는 소견발표 전날 정오까지 소견발표 원고를 총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각 소견발표자에 대한 질문은 소견발표가 끝난 다음 사회자가 총선위 위원에게 미리 배부한 질문지를 수거한 후,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고 무작위로 선정하는 3개 문항에 대해 실시한다. 다만, 질문 문항이 3개 미만인 경우 사회자가 3개 문항까지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⑤소견발표회 시행계획은 건국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간서명



제6조(총장후보자 선정 및 추천) ①총선위는 소견발표회가 끝난 직후 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투표(총선위 위원 1인이 총장후보자 1인을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상위득표자 3인을 총장후보자로 선정한다.

②1차 투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하여 총장후보자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되, 총선위 위원 1인이 동점자 중 1인을 투표한다.

③총선위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후보자 선정 투표 시 각 후보자의 건학정신의 계승 및 발전, 대학발전 비전, 학문적 소양, 국제적 안목, 인격과 덕망, 대학행정 및 경영 능력, 재정안정화 방안, 당면현안 해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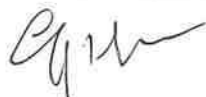
④총관위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총장후보자를 지체 없이 법인 이사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결과의 공개제한) 총장후보자에 대한 투표 결과 3인의 최종 후보자 성명만 발표하며 득표수, 순위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24년 5월 7일(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은 규칙 제13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효력을 갖는다.

간서명



<별지 제1호 서식>

<건국대학교 총장후보자 공개모집 공고문>

건국대학교 제22대 총장을 초빙합니다

우리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건국대학교의 총장으로서 4년간 건국대학교를 이끌어 가실 분을 다음과 같이 공개 초빙합니다.

□ 응모자격

학문적 소양과 덕망을 갖추고 건국대학교 건학이념을 존중하며 탁월한 국제적 안목과 학교발전에 기여할 경영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1. 본교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2. 본교 정년트랙 전임교원 4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분(다만, 동일 대학(원)에서 10인을 초과하여 추천받아서 아니 되며, 교원 1인이 총장후보자를 2인 이상 중복 추천한 경우에는 당해 추천을 전부 무효로 한다.)

□ 제출서류

1. 총 장 후 보 응 모 서 : 1부(소정서식: 파일받기)
2. 이 력 서 : 1부(자유서식: 인적사항, 학력, 대내외 경력, 연구업적, 연구활동, 사회봉사활동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
3. 응 모 소 견 서 : 1부(자유서식, A4 5매 이내: 응모동기, 교육관, 경영철학, 건학정신의 계승 및 현대적 구현 방안, 대학발전 비전, 대학행정 및 경영 능력, 재정안정화 방안, 당면현안 해결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4. 정 책 · 공 약 요 약 자 료 : 1부(파일만 제출, PPT 양식으로 10장 이내, 건국대학교 발전 및 위상제고 방안(교육·연구·학생지원·행정·재정 분야 등))
5. 사 진 / 이 력 서 : 1부(파일만 제출, 프로필사진 1장, 이력서는 학력 3가지·경력 5가지로만 (홈페이지공지용) 작성)
6. 자 기 검 증 리 스톱 : 1부(소정서식: 파일받기)
7. 총 장 후 보 자 추 천 서 : 1부(소정서식: 파일받기)
8. 서 약 서 : 1부(소정서식: 파일받기)
9. 성 범 죄 경 력 조 회 동 의 서 : 1부(소정서식: 파일받기)
10. 개 인 정 보 동 의 서 : 1부(소정서식: 파일받기)

※ 소견발표 원고 80부[건국대학교 발전 및 위상제고 방안(교육·연구·학생지원·행정·재정 분야 등)]는 소견발표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받을 예정이오니, 총장후보 응모자께서는 미리 소견발표일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소견발표일과 제출 장소는 추후 통보 예정)

□ 제출기한 : 2024년 5월 00일(0) 15:00까지(우편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장소 :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경영기획실 경영지원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행정관 305호, ☎450-3023)
※파일은 kuf@konkuk.ac.kr로 제출

□ 기 타

1. 기타 세부사항은 응모자에 한하여 학교법인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2. 이력서 기재사항(학력, 연구업적, 연구활동, 경력, 사회봉사 활동 등)에 대한 증빙은 관련부서(교무팀, 연구기획팀 등)에 기 제출된 내역으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 관련부서에 제출되지 않은 이력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학교법인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가 증빙서류의 실제 제출여부는 접수 마감일 이후 학교법인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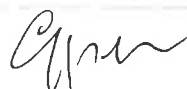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간서명

총장후보 응모서

소속·직위	
성명	
생년월일	(만 세)
연락처	(핸드폰) (연구실) (이메일)
<p>상기 본인은 건국대학교 제22대 총장 공개모집에 응모하기 위하여 첨부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후보자 자격 박탈 포함)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p> <p>2024년 월 일</p> <p>성명 인</p> <p>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 귀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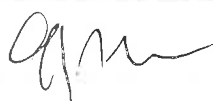
간서명



<<자기검증 리스트>>

신상 관련	예	아니오
1. 재직 중 징계 처분(견책 이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2.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징계 사유가 직무 관련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알선 청탁이었습니까?		
3. 징계 사유가 부하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려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까?		
4. 본인이 경영하던 단체에서 부정회계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경험이 있습니까?		
5.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체포된 경력이 있습니까?		
6. 형사법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7. 금고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8.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9. 자녀의 입시 또는 취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10. 성희롱을 포함하여 폭력, 폭언, 인격적 모독행위 등 인권 침해행위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1. 사회 통념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내기 골프나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건강 관련	예	아니오
12. 총장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질병이 있습니까?		
재산 형성 관련	예	아니오
13. 재산형성이나 재산이용에 있어 농지 취득, 차명 부동산, 차명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과 관련된 불법 혹은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14.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형성이나 재산의 이용에 있어 사회 통념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15. 위장 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16.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 상속채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17.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적이 있습니까?		
18. 개인파산 전력이 있습니까?		

간서명





학력, 경력, 연구 관련	예	아니오
19.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있는 기업 관련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20.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표기한 적이 있습니까?		
21. 논문의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논란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22. 논문 작성 시 직위를 남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3.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내부 및 외부 기관으로부터 징계 또는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24. 부실한 강의 및 연구실적으로 교내외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25. 승진 또는 승급에서 탈락한 사실이 있습니까?		
26. 귀하께서 총장에 임용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술단체 혹은 학자 등이 있습니까?		
<p>추가 기재사항 : 아래 칸에 본인이 검증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거나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해당번호와 그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공간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p>		
<p>본인은 제22대 건국대학교 총장후보 응모자로서 상기 자기검증 리스트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일 위 기재한 사항의 일부라도 사실이 아닐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확인합니다.</p>		
<p>2024년 월 일</p>		
<p>제22대 총장후보 응모자</p>		<p>(서명)</p>

간서명




서 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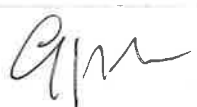


1.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의 정관과 건국대학교 총장 선임에 관한 규칙(운영세칙 포함) 및 관련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법령 및 정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파산선고, 범죄사실(수형사실 등), 「건국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5조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에 관한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을 확인합니다.
2. 선거운동 금지, 총장후보자 선정 절차 등 관련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규칙이나 후보자 의무의 위반 또는 해태, 제출 서류의 허위·착오 기재,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을 확인합니다.
4.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대결로 총장후보자 상호 간 선의의 경쟁을 하며, 비난·음해 등 기타 공모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총장후보 응모자 성명 (인)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 귀하

간서명

<별지 제6호 서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건국대학교 취업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광진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간서명

